

#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  
- 국내은행 40% → 50%, 외은지점 200% → 250%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협의를 거쳐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함
- 금번 결정으로 '20.3.19일부터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확대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 채희권(02-759-5737) 차 장 허 현(02-759-5752)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유병희(044-215-4710) 서기관 이재우(044-215-4711)  
사무관 김성철(044-215-4712)  
외화자금과장 주현준(044-215-4730) 사무관 이용준(044-215-4733)  
외환제도과장 오재우(044-215-4750) 사무관 홍승균(044-215-4751)

Fax : 02-759-5736 E-mail: [ifpteam@bok.or.kr](mailto:ifpteam@bok.or.kr) (한국은행)

공보관 : Tel. (02) 759-4038, 401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붙임>

##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3.16일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점검결과 국내은행 외화LCR 비율\*이 2월말 128.3%(잠정)로 규제비율(80%)을 크게 상회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나,

\* 외화LCR(Liquidity Coverage Ratio) :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 국내 외환스왑시장(참고1)의 경우 외국인 주식자금 관련 수요 등으로 일시적인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협의를 거쳐 기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함

○ 금번 결정으로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확대될 것임

○ 선물환포지션 한도\*(참고2)는 '10.10월 급격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시장여건 및 여타 건전성제도 개편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 왔음

\* 선물환포지션(= 선물외화자산 - 선물외화부채)을 자기자본 대비 上限을 설정  
→ 현재 한도는 국내은행은 40%, 외은지점은 200%

- 금번 조치는 '20.3.19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현재 선물환 포지션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예: 은행은 외환스왑시장에서 외화를 주고 원화를 빌려오는 거래를 통해 외화자금을 공급하며 외화 공급규모 만큼 선물환 포지션 ↑  
 →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시 스왑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외화규모 ↑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추이**

	제도도입	1차 조정	2차 조정	3차 조정	4차 조정
(도입·조정)	('10.10월)	('11.7월)	('13.1월)	('16.7월)	('20.3.19일)
국내은행	50.0%	40.0%	30.0%	40.0%	50.0%
외은지점	250.0%	200.0%	150.0%	200.0%	250.0%

- 아울러 4개 기관은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물론, 외환스왑시장 동향 및 해외자금 조달 여건 등을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기관들이 외화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지원해 나갈 것임
- 또한, 향후 스왑시장 수요·공급 양 측면의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관계기관과 함께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임

## 참고 1

### 외환스왑시장 개요

- (개념) 한 통화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통화를 차입하는 시장
  - 현물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한 후,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정한 선물환율로 통화를 재교환
    - (외화 수요자(=원화 공급자)) 외화를 빌리고 대신 원화를 빌려줌
    - (원화 수요자(=외화 공급자)) 원화를 빌리고 대신 외화를 빌려줌
- (외환시장과의 구분) 외환시장은 '외환'을 사고파는 '매매 시장'이며, 외환스왑시장은 '외화 자금'을 거래하는 '대차 시장'의 성격
  - 외환스왑시장 참가자들은 환변동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

외환시장-외환스왑시장 비교

	외환시장	외환스왑시장(외화자금시장)
기능	외화 매매	외화 대차
가격변수	환율	스왑 레이트
환변동시 위험	有	無

- (가격) 스왑레이트\* ⇒ 외화유동성 지표로도 활용

\* 스왑레이트 = (선물환율 - 현물환율) / 현물환율

- 스왑레이트 하락은 외화유동성 부족 의미
- 스왑레이트 상승은 외화유동성 풍부 의미

## 참고 2

##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개요

- (개요) 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 - 선물외화부채)에 자기 자본 대비 上限을 설정하는 제도
- (법적 근거) ①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②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및 ③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제2항에 근거

\*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제2항) 선물환포지션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환은행의 매입초과포지션 또는 매각초과포지션을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은행법」 제58조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경우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기획재정부장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 □ 연혁

- ① ('10.10월) 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 억제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도입 ⇒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 ② ('11.6월, 한도축소) 역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은행의 선물환매입포지션 빠르게 증가, 단기외채 확대  
⇒ 국내은행 50% → 40%, 외은지점 250% → 200%
- ③ ('12.12월, 한도축소) 향후 해외 자금유출입 확대 가능성 대응  
⇒ 국내은행 40% → 30%, 외은지점 200% → 150%
- ④ ('16.7월, 한도확대) 美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며 '15년 하반기부터 외화자금 유입 흐름 약화, 외화LCR 규제 도입으로 여타 외환관련 건전성 규제 조정  
⇒ 국내은행 30% → 40%, 외은지점 150% → 200%